

# 송도 하늘채 아이비원(M2-3-1,2BL) 입주자모집공고



■ **정정사항** - 1페이지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 본 아파트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추가)]  
 - 27페이지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제출 일정 2022.07.28.(목) ~ 2022.08.02.(화) > 2022.08.04.(목) ~ 2022.08.09.(화)  
 - 28페이지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2022.08.08.(월) ~ 2022.08.11.(목) > 2022.08.16.(화) ~ 2022.08.18.(목)  
 상기 표기가 잘못된 점이 수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홈페이지 운영 안내
  - 국토교통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건보주택 운영 관련 협조요청'에 근거하여 「송도 하늘채 아이비원」의 건보주택 방문 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함께 운영되는 홈페이지(<http://www.송도하늘채아이비원.com>)를 통해 분양일정, 청약안내 및 상품안내 등 분양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건보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건보주택 입장 전 및 건보주택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 건보주택 입장 시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 건보주택에서 실시하는 검역에 응하지 않는 경우(비접촉체온계, 손소독제 등)
  - 기타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와 전화상담 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해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과 관련된 전화상담은 청약신청 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서류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대응 내용은 향후 변동)
- 본 아파트는 2021.11.1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 07. 14.입니다. (청약자격조건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 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이며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만 1순위 청약 가능)
- 본 아파트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6호)	10년간

- \* '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는 당첨일로부터 10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 되며, 당첨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기타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인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거주제한기간이 2년인 주택은 각 연도별 183일을 말함)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동일)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 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 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 저가주택 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 저가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경제자유구역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단, 철거민 및 도시 재생 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불필요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세대주 요건	-	-	-	필요	필요	필요	-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 금융인증서, ③ 네이버인증서 또는 ④ KB 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 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	○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 후 재공급	○	○	X	X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공급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공급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건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5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송도하늘채아이비원.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용 확대 요청)호에 따라 '20.3.16 이후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서 입주자모집공고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투기과열지구내 공급 주택은 500% 적용)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고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구분 없이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멸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

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인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 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 공급하는 주택으로 담보 인정 비율(LTV), 총부채 상환비율(DTI) 등 대출제한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5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다만,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5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적층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청약 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 공급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 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 정지, 등록 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 2020.0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 본 아파트는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에 위치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서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를 인천광역시 2년 이상(2020.7.14. 이전부터 계속 거주 이하동일)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인천광역시 거주자 중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를 포함하여 수도권 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 순으로 공급합니다.
  -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중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 발표	당첨자 서류접수	당첨자 계약체결
	경제자유구역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일정	2022. 07. 25(월)	2022. 07. 26(화)	2022. 07. 27(수)	2022. 08. 02(화)	2022. 08. 04(목) ~ 2022. 08. 09(화)	2022. 08. 16(화) ~ 2022. 08. 18(목)
방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건본주택 방문 접수 (10:00 ~ 17:00)	건본주택 방문 계약 (10:00 ~ 17:00)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주체 건본주택</li> <li>•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li> <li>- 스마트폰 앱</li> </ul> </li> </ul>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li> <li>- 스마트폰 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사 건본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li> <li>-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60-14</li> </ul> </li> </ul>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건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신청 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영업시간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은행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시어 청약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11.16.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I 공급내역 및 공급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도시건축과-12186호(2022.7.13.)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0-4번지 외 7필지

■ 공급규모 : 지하 3층, 지상 1~10층, 총 336 세대 중 일반분양 119 세대

[특별공급 55 세대(경제자유구역, 다자녀가구 세대, 신혼부부 세대, 노부모부양 세대, 생애최초 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4년 5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예정)

■ 공급대상

(단위 : m<sup>2</sup>, 세대)

주택 구분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m <sup>2</sup>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경제 자유 구역	다자 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 모 부양	생애 최초			계
민영 주택	2022-000488	01	032.4584A	32A	32.4584	14.2408	46.6992	35.3031	82.0023	14.94	8	1	-	1	-	1	3	5	2
		02	032.7470B	32B	32.7470	14.2691	47.0161	35.6170	82.6331	14.94	22	2	-	5	-	1	8	14	6
		03	059.3215A	59A	59.3215	24.8547	84.1762	64.5206	148.6968	27.52	64	6	6	13	2	4	31	33	13
		04	059.4882B	59B	59.4882	25.4560	84.9442	64.7020	149.6462	27.55	11	1	2	2	-	1	6	5	1
		05	059.0208C	59C	59.0208	24.8859	83.9067	64.1935	148.1002	27.34	14	1	2	2	1	1	7	7	1
		합 계									119	11	10	23	3	8	55	64	23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m<sup>2</sup>, 원)

주택형	동호별	약식 표기	층수	해당 세대 수	대지비	건축비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
									계약 시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2022.09.28		2022.10.28	2022.12.28	2023.02.28	2023.05.29	2023.08.28	입주지정일 (30%)
032.4584A	101동,105동	32A	3,4층	3	113,796,660	181,013,340	294,810,000	29,481,000	29,481,000	29,481,000	29,481,000	29,481,000	29,481,000	29,481,000	88,443,000
			5,6,7층	3	114,506,900	182,143,100	296,650,000	29,665,000	29,665,000	29,665,000	29,665,000	29,665,000	29,665,000	29,665,000	88,995,000
			8,9층	1	115,051,160	183,008,840	298,060,000	29,806,000	29,806,000	29,806,000	29,806,000	29,806,000	29,806,000	29,806,000	89,418,000
			10층	1	115,599,280	183,880,720	299,480,000	29,948,000	29,948,000	29,948,000	29,948,000	29,948,000	29,948,000	29,948,000	89,844,000
032.7407B	101동,105동	32B	3,4층	10	113,746,480	180,933,520	294,680,000	29,468,000	29,468,000	29,468,000	29,468,000	29,468,000	29,468,000	29,468,000	88,404,000
			5,6,7층	6	114,460,580	182,069,420	296,530,000	29,653,000	29,653,000	29,653,000	29,653,000	29,653,000	29,653,000	29,653,000	88,959,000
			8,9층	2	115,008,700	182,941,300	297,950,000	29,795,000	29,795,000	29,795,000	29,795,000	29,795,000	29,795,000	29,795,000	89,385,000
			10층	4	115,556,820	183,813,180	299,370,000	29,937,000	29,937,000	29,937,000	29,937,000	29,937,000	29,937,000	29,937,000	89,811,000
059.3215A	101~108동	59A	3,4층	19	229,600,520	365,219,480	594,820,000	59,482,000	59,482,000	59,482,000	59,482,000	59,482,000	59,482,000	59,482,000	178,446,000
			5,6,7층	33	230,090,740	365,999,260	596,090,000	59,609,000	59,609,000	59,609,000	59,609,000	59,609,000	59,609,000	59,609,000	178,827,000
			8,9층	9	230,580,960	366,779,040	597,360,000	59,736,000	59,736,000	59,736,000	59,736,000	59,736,000	59,736,000	59,736,000	179,208,000
			10층	3	231,071,180	367,558,820	598,630,000	59,863,000	59,863,000	59,863,000	59,863,000	59,863,000	59,863,000	59,863,000	179,589,000
059.4882B	104동,108동	59B	3,4층	3	229,708,600	365,391,400	595,100,000	59,510,000	59,510,000	59,510,000	59,510,000	59,510,000	59,510,000	59,510,000	178,530,000
			5,6,7층	2	230,206,540	366,183,460	596,390,000	59,639,000	59,639,000	59,639,000	59,639,000	59,639,000	59,639,000	59,639,000	178,917,000
			8,9층	4	230,700,620	366,969,380	597,670,000	59,767,000	59,767,000	59,767,000	59,767,000	59,767,000	59,767,000	59,767,000	179,301,000
			10층	2	231,198,560	367,761,440	598,960,000	59,896,000	59,896,000	59,896,000	59,896,000	59,896,000	59,896,000	59,896,000	179,688,000
059.0208C	102동,103동,106동,107동	59C	3,4층	2	229,550,340	365,139,660	594,690,000	59,469,000	59,469,000	59,469,000	59,469,000	59,469,000	59,469,000	59,469,000	178,407,000
			5,6,7층	7	230,040,560	365,919,440	595,960,000	59,596,000	59,596,000	59,596,000	59,596,000	59,596,000	59,596,000	59,596,000	178,788,000
			8,9층	4	230,530,780	366,699,220	597,230,000	59,723,000	59,723,000	59,723,000	59,723,000	59,723,000	59,723,000	59,723,000	179,169,000
			10층	1	231,017,140	367,472,860	598,490,000	59,849,000	59,849,000	59,849,000	59,849,000	59,849,000	59,849,000	59,849,000	179,547,000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032.4584A	032.7407B	059.3215A	059.4882B	059.0208C
약식표기	32A	32B	59A	59B	59C

■ 공통사항

- 저층 우선 배정세대(23세대)는 총 공급세대(119세대)에 포함된 세대수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사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층·호별 구분 없이 청약순위별로 접수하여 관계법령 등에 의거하여 호수가 배정됩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카탈로그/호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나,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m<sup>2</sup>)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sup>2</sup>)로 표기 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sup>2</sup>) × 0.3025 또는 공급면적(m<sup>2</sup>) ÷ 3.3058]
-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기되고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지상층 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 보안 및 설비관련시설,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기타 지하층 면적입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및 지하 피트 등 기타 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은 실별, 위치별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 확장(일부 발코니, 하향식 피난사다리 설치공간 등은 제외)기준으로 시공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공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주택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법」 및 관련법령에 의거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 시 지적 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으로 인해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의 면

적 변경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습니다.

- 공부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은 아파트의 경우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 매입비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로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연체료 납부시 토 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 바랍니다.)
- 주택가격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증 발급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모두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및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추가선택 품목(시스템 에어컨 등) 미포함 금액이며,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별도계약을 통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 분양계약자의 동의를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 선납 시 선납금액은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선납금액 중 약정별 납부기일이 지난 경우는 주택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중도금 및 약정일 이전에 납부한 선납금액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공동주택)의 지반(공급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등이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주 등 외부 시설물, 옥탑 및 지붕구조물, 조경시설물 등의 구조물은 철근콘크리트조(PC조 포함), 철골조 등 요구되는 구조성능을 만족할 수 있는 골조형식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모든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광고,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 부적격당첨자로 관리하며 일정 기간 청약 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판매조건은 판매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편집 및 입력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II

##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분(약식표기)		32A	32B	59A	59B	59C	합계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1	2	6	1	1	11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인천광역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50%)	-	-	3	1	1	5
	인천광역시 2년 미만, 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50%)	-	-	3	1	1	5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50%), 일반공급(20%), 추첨제(30%)	1	5	13	2	2	23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2	-	1	3
생애최초 특별공급	우선공급(50%), 일반공급(20%), 추첨제(30%)	1	1	4	1	1	8
합계		3	8	31	6	7	55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상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한 후 남은 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와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1인 가구 신청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 및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li>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li> </ul>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li> <li>- 경제자유구역,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li> <li>- 노부모부양자 : 무주택세대주 요건</li> <li>※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주택공급신청자</li> <li>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li> <li>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동일)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li> </ul> </li> </ul> </li> </ul>																				
청약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ul> </li> <li>-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ul> </li> </ul> </li> <li>※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data-bbox="286 1141 2136 1401"> <thead> <tr> <th data-bbox="286 1141 766 1193">구분</th> <th data-bbox="766 1141 1227 1193">인천광역시</th> <th data-bbox="1227 1141 1680 1193">서울특별시</th> <th data-bbox="1680 1141 2136 1193">경기도(특별시 및 광역시 제외한 기타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286 1193 766 1246">전용면적 85㎡ 이하</td> <td data-bbox="766 1193 1227 1246">250 만원</td> <td data-bbox="1227 1193 1680 1246">300 만원</td> <td data-bbox="1680 1193 2136 1246">200 만원</td> </tr> <tr> <td data-bbox="286 1246 766 1299">전용면적 102㎡ 이하</td> <td data-bbox="766 1246 1227 1299">400 만원</td> <td data-bbox="1227 1246 1680 1299">600 만원</td> <td data-bbox="1680 1246 2136 1299">300 만원</td> </tr> <tr> <td data-bbox="286 1299 766 1351">전용면적 135㎡ 이하</td> <td data-bbox="766 1299 1227 1351">700 만원</td> <td data-bbox="1227 1299 1680 1351">1,000 만원</td> <td data-bbox="1680 1299 2136 1351">400 만원</td> </tr> <tr> <td data-bbox="286 1351 766 1401">모든 면적</td> <td data-bbox="766 1351 1227 1401">1,000 만원</td> <td data-bbox="1227 1351 1680 1401">1,500 만원</td> <td data-bbox="1680 1351 2136 1401">500 만원</td> </tr> </tbody> </table>	구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특별시 및 광역시 제외한 기타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250 만원	300 만원	200 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 만원	600 만원	300 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 만원	1,000 만원	400 만원	모든 면적	1,000 만원	1,500 만원	500 만원
구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특별시 및 광역시 제외한 기타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250 만원	300 만원	200 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 만원	600 만원	300 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 만원	1,000 만원	400 만원																		
모든 면적	1,000 만원	1,500 만원	500 만원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 :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11세대

구분	신청자격	당첨자 선정방법 및 유의사항								
<p>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외국인의 경우에는 무주택자를 말함)으로서 특별공급 해당 기관장이 선정한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 제5호 및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기업중상사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세부 기준」에 해당하는 분.</li> <li>- 해당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을 말한다)의 종사자.</li> <li>-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또는 국제고등학교의 교원 또는 종사자.</li> <li>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개설된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 전용 약국의 종사자.</li> <li>다. 경제자유구역 안에 소재하는 국제연합기구,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기구, 그 밖의 국제기구 종사자.</li> </ul> </li> </ul> </li> <li>-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 특별공급 세부 운영 기준」 제3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p>“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라 함은 특별공급의 대상이 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기업의 본사 또는 지사의 주소가 인천 경제자유구역 안의 당해 지구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을 말한다. (당해지구 안에 연구소만 소재하는 경우는 제외)</p> <p>“종사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로서 1년 이상을 당해 기업에 종사한 근로자를 말한다.</p> <p>“약국”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개설된 외국인 전용 약국을 말한다.</p> <p>“의료기관”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을 말한다.</p> <p>“교육기관”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또는 국제고등학교를 말한다.</p> </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 및 당첨자 선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먼저 사업 주체에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 주체는 특별공급 신청자 현황을 작성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제출합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당첨 확정자 및 예비자가 선정되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사업 주체에 대상자를 통보합니다.</li> <li>-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은 사업 주체에 통보된 자만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며, 대상자 (당첨 확정자 또는 예비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접수일에 인터넷 청약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청약 미신청 시 계약 불가)</li> <li>-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 주체에 통보하므로 사업 주체 및 주택청약업무 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당첨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li> <li>※ 소형·저가 주택 소유 시 유주택자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9호 미적용)</li> </ul> </li> <li>신청자 구비서류               <table border="1" data-bbox="1131 686 2128 949"> <thead> <tr> <th>구분</th> <th>구비서류</th> </tr> </thead> <tbody> <tr> <td>공통서류</td> <td>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법인신청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신청인 경우),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무주택서약서, 경제자유구역특별공급신청서(당사 분양홍보판 비치), 청약통장 가입증빙확인서류, 경제자유구역 내 근무경력증명서</td> </tr> <tr> <td>내국인</td> <td>신분증,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 주민등록표 등본 (배우자 분리세대일 경우 배우자 등본 포함),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td> </tr> <tr> <td>외국인</td> <td>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사실증명서</td> </tr> </tbody> </table> </li> <li>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법」 제64조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전매행위 제한 기간 및 전매가 불가 피한 경우)의 규정에 준용하며, 특별공급대상자로 확정되어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전매제한기간 내에 해당 기업 등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 또는 퇴직하는 경우.</li> <li>나. 제출서류의 위조 또는 허위의 사실이 판명되거나, 주택 소유 사실은닉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경우.</li> </ul> </li> <li>- 특별공급 대상자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사업 주체는 그 주택에 대하여 당초 계약금액으로 환매하여야 함.</li> <li>-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의 신청은 특별공급 청약 접수 전 사업 주체에 신청서를 제출 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의 대상자 적합 여부 확인을 받은 자가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여야 합니다.</li> <li>-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 “당첨자”로 간주되며, 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 및 주택 소유 등으로 인한 부적격당첨자로 판명된 경우에 당첨자로서의 일체의 권리는 소멸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명시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li> <li>-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청약 신청 자격에 대한 심사 후 부적격당첨자로 판명된 경우에 당첨자로서의 일체의 권리는 소멸되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ul> </li> </ul>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법인신청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신청인 경우),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무주택서약서, 경제자유구역특별공급신청서(당사 분양홍보판 비치), 청약통장 가입증빙확인서류, 경제자유구역 내 근무경력증명서	내국인	신분증,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 주민등록표 등본 (배우자 분리세대일 경우 배우자 등본 포함),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사실증명서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법인신청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신청인 경우),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무주택서약서, 경제자유구역특별공급신청서(당사 분양홍보판 비치), 청약통장 가입증빙확인서류, 경제자유구역 내 근무경력증명서									
내국인	신분증,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 주민등록표 등본 (배우자 분리세대일 경우 배우자 등본 포함),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사실증명서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0세대

구분	신청자격	당첨자 선정방법 및 유의사항
다자녀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기타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li> <li>-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li>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li> <li>- 자녀수에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됨</li> <li>-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 2년이상 계속 거주한 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인천광역시 거주자 중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를 포함하여 인천광역시 2년 미만 거주자, 기타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합니다.</li> <li>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광역시 우선공급 물량에서 잔여물량이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 공급물량에 포함하며, 신청미달이 발생하는 잔여물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합니다.(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신청자에게 공급함.)</li> <li>※ 인천광역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5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에서 인천광역시 2년 미만 거주자, 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와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인천광역시 거주자가 다시 경쟁하며 이 경우, 해당지역 거주 신청자 우선공급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li> <li>※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li> </ul> </li> </ul>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 발표 후 계약체결 전 서류 접수 시 배점표에 자필 작성 및 점수기재)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20% 범위) : 23세대**

구분	신청자격	당첨자 선정방법 및 유의사항
신혼부부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기타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 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 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li> <li>*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li> <li>-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li> <li>-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li> <li>-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li> <li>-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li> <li>-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li> <li>※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li> <li>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li> <li>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3.31억원 이하)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li> </ol> </li> <li>•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선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li> <li>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li> </ul> </li> <li>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 2년을 경과</li> </ul> </li> <li>•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 2년이상 계속 거주한 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인천광역시 거주자 중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를 포함하여 인천광역시 2년 미만 거주자, 기타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 거주자에게 공급</li> <li>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li> <li>*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li> </ul> </li> <li>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li> </ol> </li> <li>※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 상관없이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 2년이상 계속 거주한 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인천광역시 거주자 중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를 포함하여 인천광역시 2년 미만 거주자, 기타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li> </ul>

■ **신혼부부 특별공급 :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2022년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2년 적용)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208,934원	~7,200,809원	~7,326,072원	~7,779,825원	~8,233,578원	~8,687,331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120% 이하	6,208,935원~ 7,450,721원	7,200,810원~ 8,640,971원	7,326,073원~ 8,791,286원	7,779,826원~ 9,335,790원	8,233,579원~ 9,880,294원	8,687,332원~ 10,424,797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초과~140% 이하	6,208,935원~ 8,692,508원	7,200,810원~ 10,081,133원	7,326,073원~ 10,256,501원	7,779,826원~ 10,891,755원	8,233,579원~ 11,527,009원	8,687,332원~ 12,162,263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160% 이하	7,450,722원~ 9,934,294원	8,640,972원~ 11,521,294원	8,791,287원~ 11,721,715원	9,335,791원~ 12,447,720원	9,880,295원~ 13,173,725원	10,424,798원~ 13,899,730원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주거제, 30%)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14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8,692,509원~	10,081,134원~	10,256,502원~	10,891,756원~	11,527,010원~	12,162,264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9,934,295원~	11,521,295원~	11,721,716원~	12,447,721원~	13,173,726원~	13,899,731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 시 일반공급 30%(상위소득)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53,753) \* (N-8), 100% 기준} /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li> <li>-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li>•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li> </ul>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세대수의 3% 범위) : 3세대

구분	신청자격	당첨자 선정방법 및 유의사항
노부모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에 거주하거나 기타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 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li> <li>-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li> <li>- 세대주일 것</li> <li>-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li> </ul> </li> <li>※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 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 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li> <li>※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li> <li>※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li> <li>※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합니다.</li> <li>「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li> <li>•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li> </ul> </li> </ul>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이하 공급 세대수의 7% 범위) : 8세대

구분	신청자격	당첨자 선정방법 및 유의사항
생애최초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기타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li> <li>-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li> <li>- 세대주일 것</li> <li>-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주</li>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li> <li>* 1인 가구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li>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li> <li>-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li> <li>-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li> <li>※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li> <li>※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li> <li>※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li> <li>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li> <li>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3.31억 이하)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및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기준구분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 2년이상 계속 거주한 자에게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인천광역시 거주자 중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를 포함하여 인천광역시 2년 미만 거주자, 기타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li> </ul> </li> </ul>

■ 생애최초 특별공급 :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2022년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2년 적용)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기준소득, 50%)	130% 이하	~8,071,614원	~9,361,052원	~9,523,894원	~10,113,773원	~10,703,651원	~11,293,530원
	일반공급(상위소득, 20%)	130% 초과 ~ 160% 이하	8,071,615원 ~ 9,934,294원	9,361,053원 ~ 11,521,294원	9,523,895원 ~ 11,721,715원	10,113,774원 ~ 12,447,720원	10,703,652원 ~ 13,173,725원	11,293,531원 ~ 13,899,730원
추첨제 (30%)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충족	9,934,295원~	11,521,295원~	11,721,716원~	12,447,721원~	13,173,726원~	13,899,731원~
		1인 가구	160%이하	~9,934,294원	~11,521,294원	~11,721,715원	~12,447,720원	~13,173,725원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9,934,295원~	11,521,295원~	11,721,716원~	12,447,721원~	13,173,726원~	13,899,731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53,753)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 1인 가구 신청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청약자격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 신청자격

구분	내 용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li> </ul>
청약신청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사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li> <li>-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li> <li>-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 함.</li> <li>-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됨.</li> <li>-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li> <li>-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li> <li>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li> <li>-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li> <li>-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li> <li>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 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li> <li>-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li> <li>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li> <li>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li> <li>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li> </ol> </li> </ul>

■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거주부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거주구분
민영주택	인천광역시	1순위	전 주택형 (85㎡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점제(100%) 적용</li>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li> <li>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ul>	[해당지역] 인천광역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인천광역시 2년 미만, 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
		2순위	전 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li> </ul>	

■ 입주자저축 예치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구분	인천광역시(기타광역시)	서울특별시 (또는 부산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250 만원	300 만원	200 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 만원	600 만원	300 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 만원	1,000 만원	400 만원
모든 면적	1,000 만원	1,500 만원	500 만원

※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2016.12.30.)으로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의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에 따라 순위 산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가입기간 및 예치금(잔액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순위산정은 현행과 동일함)

- 예치금 잔액은 청약자가 청약 신청 당시 선택한 거주지(지역)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청약 가점제 산정 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li> <li>■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li> <li>■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li> </ul>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등-초본</li> <li>■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li> <li>■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li> </ul>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li> </ul>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IV 청약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경제자유구역,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2.07.25.(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li> <li>• 사업주체 견본주택(인천시 연수구 해운리로 160-14) (※고령자·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 한정)</li>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은행창구</li> </ul>
일반공급	1순위	2022.07.26(화) 09:00~17:30		
	2순위	2022.07.27(수) 09:00~17:30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나 네이버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청약통장으로 효력 상실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b>[PC 청약시]</b>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p> <p><b>[스마트폰 청약시]</b>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p> <p>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p> <p>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p> <p>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p> <p>② [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청약자격확인」⇒「세대구성원 등록/조회」및「세대구성원 동의」 · 청약연습방법 :「공고단지 청약연습」⇒「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p>
---

-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li> <li>·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li> <li>·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li> <li>· 본인확인증표</li> <li>·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li> </ul>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50%;">인감증명 방식</th> <th style="width:50%;">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준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li> <li>-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준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준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li> <li>-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별 구비서류 (건본주택 방문 접수 시 -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 청약 불가한 경우)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	· 사업주체 건본주택 비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직접 신청 시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능 단, 대리인 계약 불가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본인발급용)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및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중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 내역 발급 또는 청약Home(www.applyhome.co.kr)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도시재생부지제공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인터넷청약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출입국사실증명원	직계존비속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확인용 : 출생일(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출생일(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전체포함"으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배우자가 없는 단독 세대의 경우 제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복무확인서	본인	·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복무기간 명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다자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본인	• 사업주체 건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진단서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로 한정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사업주체 건본주택에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 사업주체 건본주택에 비치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성년인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청약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동사항 전체 포함하여 발급)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성년인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상 등재된 배우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 증명 서류(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한 임신진단서에 한함. 그 외 서류 인정불가) 제출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출산예정일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사업주체 건본주택에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 사업주체 건본주택 비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성년인 세대원	•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전원 제출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본인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5개년도 서류
	○		소득입증서류	본인 및 성년인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현재 혼인중인 경우 제출(혼인신고일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직계비속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청약신청자의 동일 등본상 등재된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 사업주체 건본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비속	•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서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단,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사업주체 건본주택에 비치
	○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분의 당점으로 인한 당점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2005.07.0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 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자격 확인 불가로 계약 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 증명서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매월신고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해당직장 - 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 평균 소득을 추정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 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사본)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본) 제출	- 세무서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 법인등기부등본(원본),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 등기소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li> <li>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무서</li> <li>해당직장</li> </ul>
국민기초생활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센터</li> </ul>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li> <li>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증명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직장</li> <li>국민연금관리공단</li> </ul>
무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사업자 확인 각서(당사 견본주택 비치)</li>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견본주택</li> </ul>

※ 상기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 기타 본 공고상에 표시되는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해당직장에서 발급 받는 서류에는 사업자의 "직인 날인"은 필수이며, 상기 제출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예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 중에 휴직을 했던 분은 휴직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에 대해 위변조 검증을 실시하며, 제출 서류의 위변조 확인 시 수사 기관에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서류구분	확인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직증명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직장</li> <li>세무서</li> </ul>	
	자영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자등록증 사본</li> </ul>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 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li> <li>*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li> </ul>		
소득세 납부 입증 서류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li> <li>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li> <li>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 증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무서</li> <li>해당직장</li> </ul>

####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 체결 이전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세대주, 해당 거주 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상기 기간 내에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 여부를 확인받아, 계약 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 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 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절차로 계약 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접수 받지 않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잘못 접수된 신청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당첨자 발표 및 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특별공급	경제자유구역,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 2022. 08. 02.(화)</li> <li>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개별조회 (공동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li> </ul> </li> </ul>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세대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세대를,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세대를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세대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 제한기간 등이 적용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 됩니다.
- 동·호수를 배정받은 예비입주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사업주체 홈페이지(http://www.송도하늘채아이비원.com)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2.08.02.(화) ~ 2022.08.11.(목) (10일간)	
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li> <li>-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gt; 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gt; 당첨사실 조회하기(아파트)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li> </ul>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2.08.02.(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 하셔야 합니다.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및 당첨자 선정방법

구분	선정방법
<p>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li> <li>•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li> <li>•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500%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 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500% 반영) 다만,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특별공급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600% 미만인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특별공급 신청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한다.</li> <li>•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li> <li>•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규정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여야 한다.</li> <li>•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li> <li>•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순번의 부여는 추첨의 방법으로 합니다.</li> </ul>
<p>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li> <li>• 제1순위에서 85제곱미터 이하인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그 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반 공급되는 주택 구분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수의 주택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li> <li>• 투기과열지구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100퍼센트 가점제를 적용한다.</li> <li>•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지역 거주자가 우선(경쟁 발생 시 인천광역시 3개월 이상 거주자가 우선함)</li> <li>•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으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①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를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 ② 나머지 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을 대상으로 공급 ③ 남은 주택은 제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li> <li>•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500%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 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500% 반영) 다만, 제2순위까지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공급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600% 미만인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공급신청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한다.</li> <li>•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li> <li>• 가점제를 적용하여 주택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1순위에서 가점제가 적용되는 공급신청자 중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정하고, 그 다음 순번의 예비입주자는 가점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1순위 공급신청자 중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정한다.</li> <li>•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구분 없이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li> <li>-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li> </ul> </li> <li>•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li> </ul>

구분	선정방법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입주자의 수가 예비입주자의 총수에 미달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li> <li>• 순번이 포함된 예비입주자 현황을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li> <li>•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li> </ul>
구분	선정방법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li> <li>•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li> <li>•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li> <li>•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li> <li>•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li> <li>•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 세대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li> <li>•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li> </ul>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로부터 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이전 사전 서류제출기간 내에 아래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해당 거주기간, 거주지역, 주택 소유, 배우자분리세대 등 확인)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부적격 처리합니다.
-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됩니다.(배우자, 직계존·비속대리신청자로 봄)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제출서류를 접수하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접수 받습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건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확인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확인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절차로 계약진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 공급유형 또는 당첨유형에 따라 아래 자격확인서류를 제출 기한까지 건본주택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구분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제출 일정	서류제출 장소	비 고
정당 당첨자 서류 제출 (특별공급/일반공급)	2022.08.04(목)~ 2022.08.09(화) 10:00 ~ 17:00	송도 하늘채 아이비원 건본주택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60-14)	※ 예비입주자의 서류제출 일정, 장소 등은 별도 공지 예정

####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 서류 안내

- 장애인 및 고령자(65세 이상)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 건본주택 방문 청약신청자 포함합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본인	• 사업주체 건본주택에 비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직접 신청 시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능 단, 대리인 계약 불가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본인발급용)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및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직계존비속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확인용 : 출생일(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출생일(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전체포함"으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배우자가 없는 단독 세대의 경우 제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복무확인서	본인	•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복무기간 명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특별공급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	• 특별공급 신청 자격별 구비서류를 참조하여 제출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소명자료)		○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주택	• '주택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서류 제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주택소유에 관한 증명 서류
		○	당첨사실 소명서류	해당기관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제3자 대리인 제출시 추가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불가함
	○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사업주체 견본주택에 비치
	○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행 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전체), 세대주 성명 및 관계,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VII 계약체결 안내

###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계약기간	계약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22.08.16(화) ~ 2022.08.18(목) 10:00 ~ 17:00	송도 하늘채 아이비원 견본주택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60-14)

※ 순위 내 청약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공급계약서 미발행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전산검색 등 청약자격 유무 판단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제출하여 부적격당첨 소명기간(7일)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이 유지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확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은 사업주체가 반환해주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은 사업주체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명
계약금/중도금/잔금	부산은행	101-2074-5369-00	교보자산신탁(주)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본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규정된 시행수탁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 (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 : 101동 301호 홍길동의 경우, 성명란에 "101301홍길동" 정확히 기재]

### ■ 계약 시 구비서류 안내

※ 당첨자 서류 제출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한 당첨자분께서는 계약기간 내 아래의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 시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구비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시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 사업주체 건본주택에서 계약금 (현금 또는 수표) 수납불가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용도 : 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용에 한함/대리인 발급용 불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계약 불가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혹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해당자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기간내 제출한 경우 제외
제3자 대리계약 시 (본인 외 모두 제3자)		○	상기 서류 외 계약자인감증명서(위임용) 대리인 신분증, 도장	본인 대리인	• 본인 외 모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제3자로 간주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용도 : 아파트계약 위임용)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사업주체 건본주택 비치) - 대리인의 신분증 및 인장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혹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인지세 납부	○		전자수입인지 납부증명서	-	-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전자수입인지(www.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구매 및 납부증명서 출력 - 수입인지 구매금액 : 15만원 - 구매절차 :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or 비회원구매 > 구매 > 납부정보 입력(인지세납부/부동산 등 소유권이전/150,000원/1건)>테스트출력 >결제(계좌이체 or 신용카드) > 출력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반드시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사업주체에서는 당첨자에 대한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 그 결과를 당첨자에게 즉시 통보하며, 당첨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료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 이종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계약을 취소합니다.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합니다.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이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건본주택에 방문하여 "계좌부활요청서(건본주택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턴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외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사업주체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자에 대한 공급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계약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

• 사업주체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계약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7일)에 재신청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하여야 하므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최초 분양계약자가 기존주택 처분서약 미이행 및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분양계약이 취소될 경우 명의변경을 통하여 분양권을 매수한 양수인은 그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며, 사업주체 등에게 이와 관련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 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 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 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 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공급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 및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 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변경 포함)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자 및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신청자,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또는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상속, 증여, 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 제외)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대장등본 상 처리일) 기준입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며, 주택 면적은 지분 비율만큼이 아니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 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검색대상 : 청약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주택처분 기준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1과 2의 처리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2.의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조 제7호의2 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 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 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한 자는 제외함)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정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 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 [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 말한대]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 '소형저가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아래 각목의 구분에 따른 공시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 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말함(동 규칙 제2조 제7호의 3)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함)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함)
  1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10호)
    - 청약접수결과 경쟁 발생 : 정당계약자 및 잔여세대 추가 계약자 모두 주택소유 봄
    - 청약접수결과 미달 발생 : 정당계약자 주택소유, 잔여세대 추가 계약자 주택 소유 아님(단, 정당계약을 포기하고 잔여세대로 계약하는 경우 주택소유로 봄)
    - '계약취소 주택재공급'에 따른 계약자는 모두 분양권(주택소유)으로 간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에 따른 공급 주택

■ 소형·저가주택 가격 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

-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분양권 등을 포함한다)이며, 주택공시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한 민영주택에 일반공급 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 해 소형저가주택등 보유 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됩니다.
  - 현재 소형저가주택 등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등'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
  -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 등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 등의 보유 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함)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따름)
  - 분양권 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소형저가주택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멸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멸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4항에 의거 부적격 당첨자의 서류를 접수일로부터 10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 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지역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로 해당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계약자 대출안내

- 본 주택의 중도금 대출 시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융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금융관련 정부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 금융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시행위탁자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편의제공에 불과함)
- 본 주택은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중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인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도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자, 대출규제 대상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 됨)
- 금융관련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 취급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도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 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금융관련 정부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 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행위탁자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기간은 사업주체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까지이며 중도금 대출금은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하기 전까지 상환하여야 하고 중도금 대출이자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시행위탁자가 대납합니다.
- 본 주택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시행위탁자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 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도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 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 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금액

(단위 : 원 / VAT포함)

타입 (주택형)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복층(최상층 다락)	
		계약 시	2022.00.00	입주지정일	금액	호실
32A	4,950,000	495,000	495,000	3,960,000		
32B	4,950,000	495,000	495,000	3,960,000	41,500,000	101-1006,1008호 105-1006,1008호
59A	16,500,000	1,650,000	1,650,000	13,200,000	58,100,000	102-1003호, 104-1004호, 105-1002호
59B	16,500,000	1,650,000	1,650,000	13,200,000	68,550,000	104-1002호, 108-1002호
59C	16,500,000	1,650,000	1,650,000	13,200,000	70,000,000	102-1002호

##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명
계약금/중도금/잔금	부산은행	101-2074-5379-00	교보자산신탁(주)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는 공동주택 분양대금, 기타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 (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 : 101동 301호 홍길동의 경우, 성명란에 "101301홍길동" 정확히 기재]

## ■ 발코니 확장 공사 시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건본주택에 설치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선택하여 계약하는 별도계약 품목으로 공동주택 분양가에는 미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시공 상(설계변경, 자재발주, 골조공사 등)의 문제로 계약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변경)계약이 불가하며, 발코니 확장 계약 등은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또는 동등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홍보물(카달로그 등) 및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입주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으며 확장형과는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손잡이 모양)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 입찰결과에 의해 제조사 및 브랜드, 개폐방향, 프레임 유리, 손잡이 등의 사양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시 각 세대의 발코니에 선홍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세대는 인접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인접세대(좌, 우, 상, 하부 세대 등)가 비확장일 경우 추가 단열공사를 위해 해당부위 벽 또는 천장이 돌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타입, 위치, 수량 등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사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는「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및 대비공간의 구조변경 절차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반드시 행정관청에 신고 및 관리주체에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경우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치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반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추가선택품목 (단위 : 원 / VAT포함)

1) 가전기기

품목	적용타입	제품명	비고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 시	입주지정일
2구 인덕션	32A, 32B		기본			
빌트인 세탁기	32A, 32B		기본			
전기오븐	32A, 32B	EON-B450M (SK매직)		350,000	35,000	315,000
	59A, 59B, 59C		기본			
3구 가스쿡탑	59A, 59B, 59C		기본			
3구 인덕션	59A, 59B, 59C	BEI3GTBI		1,130,000	113,000	1,017,000
식기세척기	59A, 59B, 59C	DUB22SB		1,160,000	116,000	1,044,000
빌트인 냉장냉동고(콤비냉장고)	32A, 32B	M272PR34BR/L		900,000	90,000	810,000
빌트인 김치냉장고	32A, 32B, 59A, 59B, 59C	K221PR14BR1/L1		1,260,000	126,000	1,134,000
빌트인 냉장고	59A, 59B, 59C	S715SI24B		6,280,000	628,000	5,652,000

2) 마감자재

품목	적용타입	제품명	비고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 시	입주지정일
주방상판, 벽: 엔지니어드스톤	32A			750,000	75,000	675,000
	32B			560,000	56,000	504,000
	59A			880,000	88,000	792,000
	59B			770,000	77,000	693,000
	59C			880,000	88,000	792,000
현관중문(3연동 슬라이딩)	59A, 59B, 59C			1,350,000	135,000	1,215,000

3) 가구

품목	적용타입	제품명	비고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 시	입주지정일
주방바테이블 + 하부장	인조대리석상판	32A		810,000	81,000	729,000
		32B		930,000	93,000	837,000
	엔지니어드스톤상판	32A		950,000	95,000	855,000
		32B		1,070,000	107,000	963,000
침실 불박이장	32A, 32B		기본	32TYPE : 최상층세대는 길이가 줄어듦		
	59A			1,100,000	110,000	990,000
	59B			910,000	91,000	819,000
	59C			910,000	91,000	819,000
안방 불박이장	59A		화장대포함	2,760,000	276,000	2,484,000
	59B			2,180,000	218,000	1,962,000
	59C			2,180,000	218,000	1,962,000
칸칸 거실 서재월	32A			1,100,000	110,000	990,000
	32B			1,170,000	117,000	1,053,000

4) 공간옵션

품목		적용타입	제품명	비고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 시	입주지정일
침실1드레스룸+슬라이딩도어		32A		옵션 선택시 불박이장(기본) 설치제외	760,000	76,000	684,000
침실2드레스룸+안방포켓도어		59A			2,810,000	281,000	2,529,000
침실1오피스월+침실1슬라이딩도어		59A		옵션선택시 침실1 불박이장 불가	2,140,000	214,000	1,926,000
침실	하이브리드월	59B			1,620,000	162,000	1,458,000
		59C			1,610,000	161,000	1,449,000
	스터디월	59B, 59C			1,100,000	110,000	990,000
드레스룸 선택 (무상)	파우더룸+드레스룸	59B, 59C			무상선택		
	드레스룸 강화형	59B, 59C			무상선택		

5) 설비 / 전기

품목		적용타입	제품명	비고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 시	입주지정일
욕실스마트환기 휠	욕실 스마트 환기휠 1개소 (공용욕실)	32A, 32B	FHD-P150S1	습도센서를 통한 자동 욕실건조, 헤어&바디 드라이 가능	450,000	45,000	405,000
	욕실 스마트 환기휠 2개소 (공용욕실+부부욕실)	59A, 59B, 59C	FHD-P150S1	습도센서를 통한 자동 욕실건조, 헤어&바디 드라이 가능	850,000	85,000	765,000
세대 환기시스템 (전열교환기)	헤파필터+공기청정모드 (내부순환모드)	32A, 32B, 59A, 59B, 59C		기본			
	내/외부 공기 살균 시스템 + 스마트 환기 시스템	32A, 32B, 59A, 59B, 59C		광촉매필터+UV LED살균 + 미세먼지, 유해가스, 온/습도 센서 자동운전	500,000	50,000	450,000
조명	조명 업그레이드 (디밍+색온도변화)	32A			2,120,000	212,000	1,908,000
		32B			2,060,000	206,000	1,854,000
		59A			2,840,000	284,000	2,556,000
		59B			2,810,000	281,000	2,529,000
		59C			2,240,000	224,000	2,016,000

6)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 / VAT별도)

타입	선택안	실내기 대수	설치장소	공급금액	계약금(30%)	잔금(70%)
					계약 시	배관공사 착수시(추후통보)
32A, 32B			거실 + 침실1	2,890,000	867,000	2,023,000
59A, 59B, 59C			거실 + 안방 + 침실1 + 침실2	5,450,000	1,635,000	3,815,000

■ 플러스옵션품목 유의사항

- 추가 선택품목은 본 공동주택 컨셉 및 주택형태, 크기, 현시점의 공급가격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 사전 수량확보 계획하는 모델로서, 입주시점의 시장가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계약자가 적의 판단하시어 계약  
하기 바람, 자재(모델)의 가격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 또는 타 자재(모델)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욕실스마트환기휠 옵션 선택 시 기본 제공되는 욕실 환기휠은 설치되지 않음
- 세대환기시스템 옵션 선택 시 옵션 기능을 위한 개별 컨트롤러가 세대 벽체에 설치됨

■ 플러스옵션품목 중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유의 사항 (이하 시스템 에어컨 옵션)

- 벽체매립형 냉매배관은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여부와 관계 없이 안방(벽걸이형), 거실(스탠드형) 벽체에 기본으로 설치됨
-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 선택시 에어컨 관련 일체의 공사 비용은 입주자 부담이며, 입주자가 별도로 시공하여야 함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음
- 에어컨 실내기의 설치위치는 시공사가 검토한 지정된 위치에 설치되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음
- 건본주택에 설치된 에어컨 실내기의 위치는 본 시공시 공사 조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시공시 설치될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 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건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 에어컨과 상이함. 건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 에어컨은 운영상 사유로 냉난방 겸용 제품을 설치함
- 세대내 제공되는 시스템 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실외기의 성능향상 및 미관개선 등을 위하여 발코니 턱 높이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선택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동일한 타입의 단위세대도 각 호수 별로 시스템 에어컨 실내기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발코니 변화층의 경우 발코니 변화 세대간 조건에 따라 일부세대에는 천장 단열재가 반영되어 실내기의 설치위치가 변경 될 수 있음), 시스템 에어컨의 위치변경으로 거실 우물천장의 모양도 상이할 수 있음(관련 동/호수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 시스템 에어컨 옵션 미선택시 에어컨 루버와 입주자가 설치하는 실외기간의 높이 차를 해소하기 위해 설치하는 실외기 받침대의 설치에 입주자 공사분임
- 시스템 에어컨 선택옵션에 따라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임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 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천정이 일부 돌출될 수 있음. 또한 등기구 위치 등 시공여건에 따라 실내기 설치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로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시스템 에어컨 및 유상옵션 계약이 불가함
- 시스템 에어컨 미선택 시 천장형 에어컨용 냉매배관 및 드레인선 설치되지 않음
- 시스템 에어컨의 실외기 설치 위치는 타입별·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은 선택옵션 내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부분적인 선택은 불가함
-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정 배관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추가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
- 시스템 에어컨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수준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 설치 위치 등의 세부 사항은 분양 키달로그 및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기타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명
계약금/중도금/잔금	부산은행	101-2080-4468-05	교보자산신탁(주)

※ 기타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는 공동주택 분양대금,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 (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 : 101동 301호 홍길동의 경우, 성명란에 "101301홍길동" 정확히 기재]

### ■ 공통사항

- 주택규모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sup>2</sup>)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2009. 4.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않음.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지된 내용과 청약자 기재사항을 반드시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함.
- 커뮤니티시설의 운영방식 결정, 운용비용 부담 및 운영의 주체는 입주 후 구성되는 자치위원회에 일임함.
-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사업주체 견본주택 및 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세대별 단지 및 지구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서, 분양계약서를 살펴보고 현장을 꼭 방문해보시기 바람.
- 각종 홍보물은 2021년 10월 사업계획변경승인 도면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시공은 준공 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됨.
- 현장여건 반영,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 분양 시 모형 및 분양 유인물 등에 표현된 공동주택의 명칭 및 동호수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된 것으로 향후 관할관청의 행정방침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에 사용한 각종 홍보용 자료 및 CG, 일러스트 등은 예비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참고하시기 바람에 계약자는 계약자용 홍보물 등을 통하여 단위세대 및 외관, 사업구역 내 각종 시설물의 위치 등을 확인하시기 바람.
- 일반분양시설인 복리시설의 대지 지분 및 하나의 단지로 복리시설과 공동주택(아파트)간 대지 경계(구획)이 없는 공유토지임
- 배치도의 대지 경계선 및 구역 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지적확정측량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승인 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물건의 견본주택, 단지배치, 단지내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 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이미지컷 및 전시모형은 전 세대 발코니확장을 감안하여 작성됨.
-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관련 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가능 하오니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해야함.
- 각종 인쇄물의 가구의 구성은 임의로 표현되었으며 및 각종 내부 마감재는 실제 색상 및 패턴과 상이할 수 있음.
- 각종 인쇄물에 명기된 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디자인, 색상 등)와 모형도(단지조경,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모형물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분양계약 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각종 인쇄물 및 모형에 표현된 옥상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및 크기,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그사인, 외벽가감, 커튼월록, 식재, 바닥포장, 단지 내 조경,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등의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평면도, 조감도, 배치도, 이미지컷,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세대 내부에 전시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에 조감도 및 배치도, 인근의 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답사 및 사전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람.
-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전후면 발코니 및 콘크리트 난간 높이는 동 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에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개임)
- 제시된 제품은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견본 또는 사진 등을 전시할 예정임.
- 본 공고 외 추가 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름.
- 시공 상의 문제로 추가 선택품목 계약일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함.
-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유상옵션 설치금액은 기본형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 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추가 선택품목에 대하여는 사업주체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람.

- 상가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을 참조하시기 바람.
- 주택형별로 확장면적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에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건축물의 색채, 형태, 패턴, 마감재와 같은 외관디자인은 시공 상의 문제나 향후 시공과정 상 변경될 수 있음.
-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인허가관청의 인허가 조건(사업계획(변경)승인, 건축 심의조건 등)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및 비상차량통선 등), 조경수와 조경시설(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휴게공간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대지 경계선형 등의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수와 조경시설의 위치는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단지 옥외공간의 조화 등에 따라 선형이나 포장과 시설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 패턴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의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 있음.
- 설계도면에 반영되거나 단지 내 설치된 공용설비로 인한 제반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됨.
- 단지 내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의 세부시설 및 마감은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계약자의 경우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
- 단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 및 시설에 대한 사항은 최종 지적확정측량 성과도서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선형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주택의 명칭 및 단지 내 명칭, 동번호는 입주 시 본 광고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분양 시 입주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므로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조경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계획, 세부식재 위치 등은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각 동의 일부 세대는 보안등, 옥탑 및 조경용 조명 불빛으로 인하여 불편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홀로 출입하는 통로는 동별 구조적 조건(통로폭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출입문 크기가 다를 수 있음.
- 방범용 CCTV는 지하주차장, 단지 차량출입구, 놀이터, 동출입구, 엘리베이터 내부 등에 설치되며 CCTV의 설치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고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매연,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통합배선 네트워크 장비 중 Work Group with Hub는 기간사업자 제공 분으로 시공사에 설치를 요구할 수 없음.
- 무인택배 및 주차관리시스템 등 입주자 편의시설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 차량번호 등)를 요구할 수 있음.
- 공동주택 전기 공급을 위한 한전 시설물(전주, 변압기, 개폐기 패드 등)이 지상에 설치되므로 일부 세대에서 보일 수 있음.
- 소방 및 정전 관련 시험운전 시 소음, 매연,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내에 세대 분전함 및 통신단자함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홍보물 등에 사용된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으로 실제 시공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직접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기 바람.
- 본 공동주택의 공급가격(분양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전용률, 층별, 향별, 일조권 등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로 공급금액이 상이하므로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관할관청, 사업주체, 중도금대출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 시 현재조건을 확인하여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조건 보장 및 변경 등의 요구를 하는 것은 불가함.
-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제하게 되는 경우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 정리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할 예정임.
- 본 공동주택의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임.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도(단지조경 및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등)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시공과정상 경미한 설계변경이 될 수 있고 시공 시 다소의 차이가 생길 수 있으며 대지 주변 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음.
- 본 공동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됨.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항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냉난방기 등의 가전기기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이므로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외국인인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영리목적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또한, 외국인 거소 요건에 따라서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이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하며, 이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음.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시공사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계약일 이후 관계법령, 조례의 제정·개정 등으로 규제내용이 강화되어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변경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제 요구 등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람.
- 건본주택에는 확장세대 기준 전용 59A, 32A타입 주택형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주택형은 단위세대 컴퓨터그래픽(CG)과 안내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세대내부, 가구배치, 실면적 등 건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람.
- 동호수 당점 시 동일한 주택형 및 평면이나 건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계약 전 세대 내부배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사용검사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사용검사 전·후 최종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함.
- 본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 각종 분양홍보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향후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주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홍보유인물에 표시된 주변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추진 예정 및 실행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평면도, 홍보물 이미지컷, 건본주택 내 단위세대 모형도, 컴퓨터 그래픽(CG)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바람.
- 본 아파트의 명칭, 외부색채와 외부상세계획 등은 법규변경, 현장 시공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시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측벽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음.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쓰레기 집하장 등의 공용 설비로 인해 냄새, 소음 및 진동, 해충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홈네트워크 설비는 모델하우스 사양에 따라 시스템 장비 구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CCTV를 위한 주차장 카메라의 설치 및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요 방법 및 방제활동 영역에 보안등과 CCTV가 설치될 예정이나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기능과 감시범위 등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저층부는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고 가로등 및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전기실 및 발전기실 등에 인접한 동은 발전기 비상가동 및 주기적인 유지보수를 위한 가동으로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하고 배기가스가 외부로 배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이 노출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상부는 근린생활시설용의 배관, 케이블 및 기타설비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일부동 외부계단측 외부용 승강기가 설치되어 인근 세대는 소음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단지 모형 등을 통해 확인할 것.
- 동 상부 다락세대 지붕에 전기 생산을 위한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되며 위치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동 배치, 일조량, 그늘 여부에 따라 일부 동 혹은 전체 동에 분산 설치될 수 있음)
- 지붕 및 옥탑에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배관, 경관조명, 공용조명, 위성안테나, 공칭 안테나, 태양광설비, 이동통신 중계기, 항공장애등,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명 및 빛의 산란, 기타 등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 지붕층에 피뢰설비가 설치되며 일부동 일부층은 아파트 외벽에 측뢰용 피뢰침이 시공됨.
- 야외 조경용 조명 및 공용부위 조명 등에 의하여 일부 세대는 눈부심이 발생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현장 여건에 따라 전기차 주차구획과 충전설비의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충전설비 설치 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 될 수 있음.
-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설치될 예정이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음. 입주 후 기기에 대한 유지, 관리, 보수 및 전기세 납부는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해야 함.
- 급속충전시스템 확대 시 전기차 충전시스템 전체 숫자는 축소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이용차량에 의해 출입구 차단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동파가 우려되는 설비배관에는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적용되며 이에 따른 전기료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됨.
- 무인택배시스템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되며, 무인택배함의 설치위치는 단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따라 한국전파진흥협회(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협의하여, 이동통신 옥외안테나 및 중계 장치는 107동, 109동, 112동, 114동, 117동, 119동의 옥상층에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차량출입구에 인접한 동 및 저층 세대는 차량의 운행에 따른 소음 및 차량조명, 차량 진출입에 따른 출차주의 등에 의한 경보음으로 인해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한국전력 전기공급약관에 의거하여 부지 내 전력공급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인 한전 공급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제공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민에게 있으며 설치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한국전력공사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 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설물 위치는 한국 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등)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동별 형태, 세대수, 세대 면적 및 층수에 따라 승강기의 대수, 속도 및 사양에 차이가 있으며 시공과정에서 디자인 및 일부 사양이 변경될 수 있음.
- 승강기 출입문과 세대 현관문이 마주하고 있는 세대 등에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공용부위 조명 및 경관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싸인용 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기본 제공되는 계약용량 및 분전설비 외에 계약자에 의해 증설되는 전기용량, 배관 및 배선 등은 직접 공사해야 함.
- 세대 분전반 및 세대 통신단자함 설치된 벽에 전기/통신 배관라인(보통 수직형성) 구간에 대하여 못질 또는 브라켓 고정 등 벽체 파손행위 지양하시기 바람.
- 비확장 발코니 및 실외기실 상부에는 슬라브나 천정내부에 전기, 설비 시설물이 있으므로 타공 시 파손을 일으킬 수 있음.
- 통신사 중계기안테나는 104, 105동 지하1층에 설치됩니다.
- 공청, 위성TV 안테나 설치위치는 105동에 설치됩니다.
- 단지 내 전체 전기차충전기 수량은 총 6대로 지하2층 급속 4대, 지하1층 급속 2대가 설치됩니다.
- 태양광설비는 각동에 설치되며 전체용량은 72.24kW입니다.

#### ■ 단지 여건사항

- 사업지 주변 아파트 발생 소음 또는 공사로 인한 소음 등 주거환경 침해요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현장여건을 확인하시고 계약하기 바람이며 이로 인한 민원(보상요구, 분양가할인, 계약취소 등)을 제기할 수 없음.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 여건(현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한전주, 통신주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람이며 현장여건 미확인 및 주변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향후 주변 지역의 신축, 개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이는 당 사업과 무관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관청에 문의바람)
- 단지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및 기타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과 시공사의 경관계획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지적확정측량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폭, 레벨, 교통시설물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본 건물의 레벨차이가 있으며 단지내외도로와 대지의 경사도 및 레벨계획은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A블럭과 B블럭 사이 보행자 전용도로는 단지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며 인허가 및 심의 등에 의해 변경되거나 조정될 수 있음.
- 전동 지상1,2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어 소음 피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102동 지상1층과 103동 지하1층, 107동 지하1층 인근에는 부대복리시설이 설치됨.
- 지하1층의 부대복리시설은 근린생활시설과 인접하여 계획되어 있으며 계단 및 승강기를 같이 사용함.
- 어린이놀이터는 A블럭 지하1층 선근에 설치되어 있음.
- 각종홍보물 및 견본주택에 CG로 표현된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하므로 제공 집기 및 마감재도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 있음.(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하여 사업주체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중요일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시까지 주민공동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동법 제23조에 의거하여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세대에 부과하고 단지별 시설차이로 인한 일반관리비는 상이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내 일부 공간은 입주민을 위한 A/S센터가 운영된 뒤 향후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변경될 계획임.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기본 마감이 제공되고 집기류는 일부만 제공됨.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배치 형태, 내부구조 등 건축계획과 마감재, 집기는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홍보용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 하여야함.
- 본 아파트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 부대복리시설 및 기계/전기실은 설계변경을 통하여 실제 시공 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형태(색채, 재질, 간판형태 등),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경로당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포함)의 구성 및 실배치 형태, 내부구조 등 건축계획과 마감재 및 집기는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배치 상 동, 향,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인접 동 및 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건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 하여야함.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이 노출되어 소음 및 시선간섭이 있을 수 있음.
- 지하 1,2층 주차장 진입 및 주행 유효높이는 2.7m로 소형택배차의 진입은 가능하나 사다리차, 대형차, 대형택배차 등의 진입은 불가함
- 지하주차장 (천장)상부는 각종배선, 배관이 노출됨.
- 주동 입면하단부 도장, 석재 및 상단 몰딩 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 등의 변경이 계약체결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품설치계획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실내 개방감 확보를 위해 입면 분할 창호를 적용하여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 외부 입면 장식물, 바닥마감 등으로 인하여 일부 세대에는 사다리차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 1층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이삿짐을 운반하여야 함.
- 단지 주/부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상가동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음.
- 단위세대 내 분전반, 단자함, 조명기구, 월패드 및 배선 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해당주택의 입주 후 주차공간을 이용함에 있어 모든 이용자는 상호간에 불편을 야기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차문제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사무소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함.
- 아파트 세대 현관문은 공사 시 일부 폭과 높이가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실외기실 창호는 외부 입면계획에 따라 공사 시 일부 폭과 높이가 변경될 수 있음.
- 볼박이 가구가 설치되는 부위의 상/하부 및 벽부(일반가구, 주방가구, 욕실가구, 거울마감 등)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도배지, 타일, 온돌마루 등)
- 세대 내 적용된 마감재는 본 공사 시 업체의 부도, 자재의 품귀 등으로 인하여 적용 불가 시 동급의 타자재로 변경됨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단지 내 출입구, 도로 등은 공동주택과 공동으로 사용하며 주차장은 각 용도별 구획되어 있음.
- 부대시설 건물에 인접한 일부세대는 시선간섭, 프라이버시 및 소음 등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확정시에는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지하 주차장 출입구와 근접한 저층 일부세대에는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헤드라이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단지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의 용도가 함께 설치되어 있으며 지하1층에 근생 주차장이 구분되어 설치되어 불편한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바라며 이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지붕층, 옥탑층에는 반사경, 의장용 구조물·태양광발전 패널 및 구조물·야간경관용 조명·항공장애등·위성안테나·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각 주동별로 형태가 상이하여 주동 E/V, 계단실 위치가 다를 수 있고 주동 형태별로 E/V홀 창호의 크기, 위치, 높이가 상이할 수 있으며 일부 동의 계단실 및 E/V홀에는 창호가 설치되지 않거나 고정창으로 설치됨.
- 각종 환기구(DA 등)는 환기장치 작동 시 기류 및 장비소음 및 배기가스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시 시설물 배치계획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필로티 내부에 환기/제연용 D/A 및 그릴창이 설치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로 인한 인근세대의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옥상에는 각 세대의 주방, 욕실 등의 통기구 및 배기구를 위한 동력팬, 배기탑이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인근세대의 경우 소음, 진동, 냄새, 해충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101동, 105동 옥상에는 근린생활시설 지역냉난방설비를 위한 냉각탑 장비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하부세대의 경우 소음, 진동, 냄새, 해충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계약 전 단지 모형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람.
- 건물 외벽에는 각종 설비(환기, 냉난방, 가스, 정화조 등)를 위한 배관, 덕트, 환기캡, 연도 등이 노출 설치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될 수 있고, 소음, 진동, 냄새, 해충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101동, 105동 옥탑층에 근린생활시설용 냉방설비가 설치되며 인접 세대의 경우 소음, 진동,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의 분양시점에 따라 MD계획이 미확정될 수 있으며, 추후 MD계획 확정에 따른 면적 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용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101동, 105동 지하층 인근에 설치되며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이 발생할 수 있고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용 저수조, 고가수조, 탈취설비, 실외기, 연도 및 각종 장비류로 인하여 인근 동에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주차구획은 아파트와 분리되어 있으나 아파트 주출입구를 같이 사용함.
- 음식물쓰레기 투입구는 사업소와 요금부과 등의 통신을 하기 위하여 통신요금에 관리비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단위세대 유의사항

- 본 아파트의 서비스 면적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서비스면적 증감은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당 아파트 배치구조, 동 호수별 위치, 인근 아파트단지 및 주변 건축물에 따라 일조·조망·소음·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 체결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동 형태로 인한 요철, 입면 마감재 및 장식물, 외부승강기, 계단실, 정화조 배기탑, 가스정압기, 지하층 환기용 급배기구,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인하여 일조, 조망,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관련한 건축법제규정을 만족함에도 저층세대 및 일부세대는 향, 배치에 따라 일조가 충분하지 않거나 불리할 수 있음.
- 단지 배치 상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 위치에 따라 일부세대는 냄새, 해충 등에 의한 생활환경상 불편이 발생할 수도 있음.
- 주변도로와 단지출입구, 지하주차장 출입구, 필로티, 주민공동시설 등과 인접한 세대는 도로소음 및 야간에 가로등, 차량 등으로 인해 취침에 방해받을 수 있음.
- 단지 내 보행자도로, 동출입구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분진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일부 동에 설치된 필로티는 공공통로로서 그 인접 상부 세대는 소음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음.
- 아파트 주동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본 공사 굴토 후 지내력 시험결과에 따라 최종확정,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아파트 옥상 및 옥탑층에는 의장용 구조물 및 구조물·야간경관용 조명·위성 및 공청 안테나·피파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세대들은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발코니확장으로 인한 실, 내외 온도차이 및 생활여건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주기적인 실내환기, 환기설비 가동은 동절기 결로 발생 예방에 도움이 됨)
- 계약 시 제시된 조감도, 세대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승인 또는 설계변경에 관한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함
- 주택법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 아파트의 시공상 구조(기초형식변경 포함) 및 성능부분에 대하여 행정관청협의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음.
- 법적 기준에 따라 층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층별 분양가를 산정함.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확장형 선택 시 단열재 추가설치 등으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입주후 (가칭)주민자치협의기구에서 결정하여 운영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 부대복리시설은 실시공 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사용자동선, 입면형태,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 시 각 동별로 계단실, E/V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차이와 동선의 편차가 있으므로 시설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확인바람.
- 단지 내 계획된 어린이놀이터로 인해 인근 해당 동 및 세대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내 발전기 가동으로 인해 일부 세대에 소음, 진동, 냄새로 인해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 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고 공간의 명칭 및 외부시설물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주출입구의 경비실 및 문주 등은 위치가 이동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는 변경 사용될 수 없으며 아파트 지하 피트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절차 즉 준공 시 지적확정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배치 특성상 단지 내 도로(지하주차장램프, 비상차로포함)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전조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내 전기 인입으로 인한 전주 또는 한전PAD 스위치가 설치될 수 있으며 미관을 저해할 수 있음.
- 단지 외부도로계획 및 도로관련 시설물 등은 별도 인허가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시공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법령에 의함.
- 입주 후 불법구조물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동일지역 및 그 외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부대편의시설, 조경과 당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
- 각 주동별로 형태가 상이하여 주동 E/V, 계단실 위치가 다를 수 있고 주동 형태별로 E/V홀 창호의 크기, 위치, 높이가 상이할 수 있음.
- 향후 관련단지 외관향상을 위하여 주동부의 옥상장식물과 외부색채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변경에 대하여는 사전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세대 내 가스배관은 노출배관으로 시공되며 주방가구에 가스 점검을 위한 점검구 또는 점검용 홀이 설치되어 주방 상부장의 규격은 변경 될 수 있음.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음.
- 실외기는 실외기실의 여건상 계약자가 희망하는 에어컨의 실외기실의 폭, 높이 및 전기사양 등의 차이로 인하여 설치 불가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도면에서 이를 확인하고 에어컨 전문업체 확인 후 설치하시기 바람.
- 에어컨 실외기실용 전원은 전 세대 단상(1ϕ x 220V x 60Hz)이 공급되며 삼상 전원은 공급할 수 없으므로 입주 후 제품 선정 시 유의하시기 바람.
- 복도 및 세대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음.
- 각 주동 진입구는 계단실이 면한 부분이며 다른 면으로 진입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일부 구간 지하주차장 벽이 노출 시공되며 도장 등으로 마감됨.
- 당 아파트의 시공 상 구조 및 성능부문에 대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람.(설계변경 시 당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아파트에 적용된 각종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당사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사유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음.
- 분양 시에 제시된 조감도, 세대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시행 변경인가 또는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함.
- 지적확정측량결과, 관련법규의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승인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물건의 견본주택, 단지배치, 단지내도로 선형, 조경(수목,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 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 시험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변경될 수 있음.
- 주출입구, 경비실위치, 지하주차장은 교통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일부 설계변경될 수 있음.
- 계약체결 이후 계약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
- 당 아파트의 구조 및 마감 개선을 위해 관계법령의 허용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 발코니 및 욕실, 주방의 경우는 상부층 세대 배관점검 및 보수를 위해 부득이 하부 층 세대에서 천장배관을 점검할 수 있음.
- 렌지후드 환기 배관으로 인해 일부 상부장의 내부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환기 배관은 세대 천장, 발코니 천장, PD 등을 관통하여 외부에 배출되는 구조로 설치될 수 있음.
- 발코니에는 가스계량기 및 가스배관이 노출되어 설치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일부 세대의 경우 가스 입상배관이 발코니 내부로 노출 설치되며 사전에 이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일부 세대 발코니에 피난기구인 완강기, 완강기보관함, 완강기 발판 등이 노출 설치되며 사전에 이를 확인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에어컨설치를 위한 벽체매립 냉매배관 박스가 거실과 안방 벽면 설치되며 거실 아트월 벽면에 설치될 수 있음.
- 세대 내에 동파가 우려되는 설비배관에는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열선 작동을 위한 전기료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됨.
- 욕실, 드레스룸 및 팬트리외 난방제어를 위한 별도의 온도조절기가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배관 설계에 따라 거실, 침실 등 타 공간 온도조절기에 의해 통합 제어됨.
- 전열교환 환기시스템 및 욕실배기, 주방배기를 위하여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소방 활동공간 및 소방 안전매트 설치구간으로 인해 식재가 배제되어 저층세대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쓰레기보관소, 자전거보관소 등 편의시설의 배치는 각 동마다 차이가 있으며 그로 인한 세대 불편이 있을 수 있음.
- 최상층(10층)세대의 다락 공간에는 냉난방 시설과, 바닥 난방 코일이 설치되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최상층 세대 다락은 분양면적에 미포함된 사항으로 설계변경 및 면적변경 시 신고사항이 아니며 설비를 위한 PD등이 신설되어 다락면적 변경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람.
- 최상층 세대 다락은 동, 호 위치에 따라 콘크리트 난간 및 입면 외장재 등으로 인하여 조망권 등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계약 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람.
- 최상층 세대 다락은 경사지붕으로 천정고가 타입별로 상이하며 바닥면적에 비해 실사용 가능 면적이 작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최상층 세대 다락의 외부 공간에는 수전 및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최상층 세대 다락은 옥상층 공용공간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다락방의 방범 및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람.
- 다락 외부공간은 공용공간이며 해당 세대의 전용공간이 아니므로 공용설비 및 시설물 유지를 위한 진입 요구 시 개방 하여야 하며 등기를 포함한 재산권 행사는 불가함.

### ■ 단위세대 및 마감재

- 공장생산자재(타일 등) 및 천연자재(석재 등)는 자재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 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한.
- 견본주택 및 단지 내에 적용되는 모든 자재 및 제품은 시공시기의 생산여건에 따라 자재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 개발 시에 한해 동질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불박이장류(신발장, 불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거울 등)가 설치되어 있는 벽, 바닥, 천장면의 마감은 설치되지 않음.
- 현관신발장, 주방가구, 각실 불박이장, 드레스룸,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 바람.
- 인테리어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死)공간이 발생할 수 있음.
- 계약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 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어 확인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 욕실바닥 및 발코니는 물 흐름 구배로 인하여 턱 높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당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발코니 미확장 세대는 공간이 협소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부분적으로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될 수 있으니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 세대 내에 세대 분전함 및 단자함이 설치될 수 있으며(돌출로 인한 미관상 수려하지 않을 수 있고) 이로 인한 설치 위치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실외기실 등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은 발코니는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으로 인한 마감재 손상이 있을 수 있음.
- 각 세대의 대피공간은 미설치되었고 하향식 피난 사다리교 대체되며 화재 시 하부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임의의 시설물, 장비, 가구 등을 설치할 수 없으며 구조 변경 등이 불가하오니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
- 3층 세대는 관련법에 따라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지 않음.
- 32A, 32B 타입의 경우 화재 등 유사시에 발코니에 설치된 경량 칸막이를 통해 인접세대로 대피하여야 함.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창호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위치, 형태, 재질이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내 분전반, 단자함, 조명기구, 월패드 및 배선 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전 평형 욕실 내 샤워부스 바닥 및 욕조 하부에는 바닥난방이 설치되지 않음. (샤워부스 바닥, 욕조 하부를 제외한 욕실부분에는 욕실 입구 일부면적에 바닥난방이 설치됨)
- 필로티 상부층 및 인접세대는 외부통행에 의한 소음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세대 내 다용도실과 발코니의 수전 및 드레인 위치(날개벽 포함)는 경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 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 일반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 시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확장 선택 시 선홍통 배수관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일부 돌출되어 미관상 저해요소가 될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비확장 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창호 및 부속철물류, 가구(시스템가구 포함) 및 가전류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각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등으로 주택전시관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동등 이상의 성능제품으로 시공됨.
- 거실 및 침실 등 천장고는 2.3M이며 본 공사 시 세대 내 천정높이는 시공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창호 사양 및 크기, 개폐방식, 개폐방향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외부샤시는 층향에 의한 바람의 영향 차이로 유리의 강도 및 두께 또는 재질의 안정성을 위해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풍압테스트 결과 및 안전상 등의 이유로 세대별, 각 실별(실별 내에서도 차등가능), 유리 두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부분의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1항3호 나목”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1.5미터를 초과하는 발코니 면적은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 처리지침(2006.1.23. 건설교통부)에 의거하여 주거전용면적으로 삼입하였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창호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위치, 형태, 재질이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3층 세대의 옥외공간은 설계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공용공간으로 다른 세대의 진입은 불가능하나 해당 세대의 전용공간이 아니므로 공용설비 및 시설물 유지를 위한 진입 요구 시 개방 하여야 하며 등기를 포함한 재산권 행사는 불가함.
- 지붕층 옥상조경 공간에는 통기 배관 및 연도가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인근 다락세대의 조망권 침해, 소음, 진동, 냄새,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주방가구 하부장에 세대 난방을 위한 온수분배기가 설치되어 주방가구 하부장의 수납공간이 줄어들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불박이장류(신발장, 불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거울 등)가 설치되는 벽, 바닥, 천장면의 마감 및 바닥 난방은 설치되지 않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우수, 배수, 선홍통 및 드레인인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고 수전이 설치되지 않은 발코니는 물청소를 위한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발코니 수전 위치 및 높이는 성능향상, 사용성 용이 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발코니 상부에 전열교환기와 환기덕트가 노출 설치되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여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 전열교환기는 세대 환기를 위해 설치된 장비로 동절기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장비 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가동하여 환기시켜야 하고 원활한 사용을 위해 주기적인 필터교환이 필요하며 필터교체 시 필터 교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본 공사 시 발코니 등의 배관 및 덕트류 설치를 위해 커튼박스의 규격이나 설치 길이 등이 건본주택 대비 일부 조정되어 시공될 수 있음.

## ■ 세대 / 규격

- 하기 마감수준 등은 현장여건 및 세부 계획 시 동등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에어컨 실외기실의 전원은 단상(10 x 220V x 60Hz)이 공급되므로 입주 후 제품 선정 시 유의하여야함.
- 에어컨 냉매배관은 2개소(거실, 침실1)에 한하여 선배관 시공됨. 거실은 스탠드타입, 침실1은 벽걸이타입으로 설치 예상하고 배관위치를 시공함.
- 난방을 위한 온수 공급은 지역난방을 이용하여 공급함.
- 주방에 가스공급을 위한 도시가스 배관 및 미터기, 전열교환기 및 배관, 배선 등이 노출 설치 됨.
- 세탁실 벽면, 드레스룸 벽면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세대 발코니에 렌지후드 배기배관 및 세대 환기용 배관(사각덕트 및 주름관), 세탁배수배관, 가스배관이 노출 될 수 있음.
- 사업주체 건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설비, 유도등,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 시공 시 관계법령 및 설계도면 기준에 맞추어 설치됨.(본 공사 시 상기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마감 사양, 우물천정,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기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건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분전반, 단자함, 월패드 및 전기통신 배선기구류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일부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운행에 의한 소음이 세대 내에서 발생할 수 있음.
-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홈네트워크의 제어범위는 거실조명제어, 난방제어 및 가스밸브차단으로서 입주개시일 이후 3개월 동안 HOMENET SERVER 가입 후 인터넷 및 휴대전화로 제어가 가능하나 이후에는 “을”이 인터넷 사업자 및 SERVER 관리업체와 별도로 이용협정을 체결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관리실에서 유선전용 채널을 통해 보내는 문자자막 시스템은 홈네트워크 시스템과 연동되지 않음.
-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등의 조정시설을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옥외공간의 모든 시설은 입주민 공동의 시설로 개인의 기호에 의한 변경은 불가함.
- 입주민에게 인계된 이후 발생하는 옥외공간의 모든 시설의 관리책임 및 비용은 입주민에게 있음.
- 개인 부주의로 인한 옥외공간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입주민에게 책임이 있음.
- 홈IoT/홈네트워크 외부제어시스템 및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용 인터넷 회선이 필요하며(전용 인터넷 회선을 설치하지 않으면 홈IoT/홈네트워크 외부제어시스템 및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음), 전용 인터넷 회선 설치비용 등은 입주자의 부담임(관리비에 포함하여 청구 또는 별도 청구).
- 홈IoT 서비스(스마트 하늘채 lok 서비스) 사용에 따른 비용은 사용검사(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 또는 동별사용검사일 포함)을 기준으로 36개월이 지난 날부터 입주자의 부담임(관리비에 포함하여 청구 또는 별도 청구).
- 음성인식 서비스는 홈IoT 서비스와 연동이 가능한 음성인식 스피커를 가전제어 서비스는 홈IoT 서비스와 연동이 가능한 가전기기를 각각 입주자의 부담으로 별도로 구매할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한 서비스임(상기 음성인식 스피커와 가전기기는 제조사, 제품의 사양 및 모델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홈IoT 서비스, 음성인식 서비스 및 가전제어 서비스는 일부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이 되거나 서비스의 제공이 종료될 수 있음.
- 스마트 도어락은 사용자 핸드폰 지문인증으로 블루투스 연동 디지털 도어락 제품이며 일부 스마트 폰과 연동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월패드, 주방TV, 욕실스피커폰 등의 전화 수신기능은 국선전화에 한하여 가능함.
- 주방TV폰 배선이 후면기구에 연결됨에 따라 노출되어 시공됨.
- 단위세대 각 침실에 적용되는 스마트 스위치의 기능은 조명기구점소등, 대기전력차단, 난방온도조절의 통합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조명기구점소등, 대기전력차단, 난방온도조절 기능을 분리하여 개별로 설치할 수 없음
- 지상 3~4층, 최상층 세대의 방법을 위하여 거실 및 발코니 내부에 동체감지기를 설치하며 기타 층에는 설치되지 않음.
- 가변형 구조 변경 시 설비기구 및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실제 시공 시 상이할 수 있음.
- 세대 분전반 및 통신 단자함은 안방, 주방, 복도, 침실(출입문 뒤편) 중에 한 곳에 설치되며 타입별로 설치위치는 다를 수 있음.
- 발코니에 전동 빨래건조대가 설치될 경우 발코니 조명이 설치되지 않음.
- 발코니 확장 시 발코니 조명은 설치되지 않으며 방들이 방 중심쪽으로 위치 이동하여 설치됨.
- 현관 쪽에 설치되는 일괄소등 스위치 기능 중 가스밸브 차단기능은 실행할 경우 가스밸브가 자동으로 잠기며 복구를 할 경우에는 주방에서 입주자가 직접 수동으로 복구해야 하며 승강기 호출기능은 아래층으로 내려가기 위한 호출기능만 포함하고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유상옵션 선택 시에도 냉매배관 설치 예정으로 콘센트가 설치됩니다.
-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위세대 평면의 배치 및 구조에 따라서 각 세대별 전유부위 및 공용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배관 및 배선은 시공방식 및 길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복도 및 세대 전유공간 천정 내부는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음.
- 세대 내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함.
- 기본 제공되는 계약용량 및 분전설비 외에 계약자에 의해 증설되는 전기용량, 배관 및 배선 등은 직접 공사해야 함.
- 승강기와 인접한 세대의 경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최상층 근접 세대의 경우 승강기 기계실의 기계 작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발코니 및 거실 빨래건조대, 벽걸이 TV등의 설치 시 매립배관 위치를 시공자가 관리소 보관중인 준공도면을 확인하고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 부주의로 인한 배관파손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세대 분전반 및 세대 통신단자함 설치된 벽에 전기/통신 배관라인(보통 수직형성) 구간에 대하여 못질 또는 브라켓 고정 등 벽체 파손행위 지양하시기 바람.
- 비확장 발코니 및 실외기실 상부에는 슬라브나 천정내부에 전기, 설비 시설물이 있으므로 타공 시 파손을 일으킬 수 있음.
- 세대 내 분전반 설치 위치 및 선반의 배치는 좌우 세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세대분전반 설치위치 관련하여, 32A/B타입은 옵션 칸칸이 간섭발생 부분과 59A/C타입은 드레스룸 화장대 간섭부분에 의해 일부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외부공간 / 단지내 조정

- 옥상조경 식재기반의 경우 수목의 생육과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경량토를 사용하므로 이로 인한 주변세대 비산먼지, 토양 날림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시행사 및 시공사가 준공 시 입주자에게 인도하는 옥외 공간 건축 기본마감(방수, 단열, 무근콘크리트 마감) 외에 입주자의 추가적인 시공 (옥상녹화, 데크, 칸막이 등)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책임이 있음.
- 단지 내 조정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마감의 재료, 패턴, 외부시설물의 디자인, 구조물의 형태 및 마감, 조경식재계획(수종과 규격, 배식위치) 등은 설계/시공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각 주거동 단지 내 공간(저층공간, 선큰, 옥상 등)은 일부 그 디자인과 조경계획 구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개인별 호불호는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설계 및 각종 인허가단계, 시공과정에서 자전거보관소와 같은 관리/편의시설의 배치계획이 달라질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시설물의 타입, 규모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저층세대 전면에는 소방차 정차 등의 이유로 배식계획이 제한되며 이에 따른 프라이버시가 발생할 수 있음.
- 옥상조경계획으로 인한 일부 세대의 조망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세대 인접 배식계획은 세대마다 상이하게 계획되며 이에 따른 개인의 호불호가 있을 수 있음.
- 옥상조경공간은 입주인이 접근하여 활동하는 공간이 아니므로 입주인이 임의로 해당 공간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문제(각종 프라이버시침해, 안전사고, 식재하자, 오염 등)에 대한 책임은 입주인 당사자에게 있음.
- 소방활동 및 안전과 관련하여 외부 공간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변경내용은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니며 입주인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용공간에 설치되는 식재 및 시설물에 대한 입주인 임의 훼손, 유지관리 미흡으로 인한 하자 발생 시 이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님.

### ■ 건본주택 유의사항

- 건본주택은 59A, 32A 주택형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밖의 주택형의 마감재 및 시스템은 동등하며 단위세대 모형도(CG)와 카탈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람.
- 건본주택 건립타입 외 건본주택 미건립 타입의 내부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은 건본주택 건립 평형과 상이할 수 있으니 비치된 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람 추후에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건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기본형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타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람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건본주택과 다소 상이 할 수 있음.
- 본 건본주택의 주방 냉장고장 및 김치냉장고장의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건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본 건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건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E/V의 인속도.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옥상 조형물(구조물)은 현장 여건에 따라 모양, 형태, 규격, 색상, 높낮이,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건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커튼, 침대, 소파 등),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사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음.(분양가 미포함)
- 건본주택에 설치된 창호(프레임, 유리등)는 건본주택 설치를 위해 생산된 제품으로 본 공사 시 제조사는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프레임 및 손잡이 등의 하드웨어는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본 건본주택은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 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건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 본 건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본 건본주택에 설치된 온도조절기 및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건본주택에 전시된 건립세대는 주택건본주택의 구조적 한계 일부공간의 천정높이 및 우물천정의 크기가 본 시공 시와 상이하게 전시되고 있으므로 건본주택에 고지된 사항을 확인하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건본주택에 설치된 홈 IoT 시연부스 이미지와 서비스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건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분전반, 통신단자함, 배선기구류, 월패드, 주방TV폰, 욕실스피커폰, 스마트스위치, 디지털도어락, 도어카메라폰 등은 제품의 성능, 디자인 및 기능개선을 위해 제품사양, 위치,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건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등 수준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건본주택 내에 설치된 조명은 매립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출조명을 연출을 위한 조명으로 본 공사에 적용되지 않는 품목임.
- 건본주택 내 설치된 CCTV는 건본주택용으로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음.
- 본 건본주택 모형에 설치된 공청 및 위성 안테나의 위치는 실제 전계강도 측정을 통하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자 사전점검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 사업주체는 국토교통부 “입주자사전점검 운영요령”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사전점검 진행절차 ① 사전점검 안내문 발송 → ② 입주자 현장 도착 → ③ 접수, 교육안내 → ④ 입주자점검 및 지적사항 작성 → ⑤ 점검표 제출 → ⑥ 입주 전 보수완료 → ⑦ 보수완료 여부 확인
- 사전방문 시 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 입주예정일 : 2024년 5월 예정 (공사일정, 인허가 등에 따라 입주 예정월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 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관련 유의사항

- 교보자산신탁(주)(이하 “자금관리 대리사무사”라 한다)는 분양수입금 등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며(수분양자의 중도해지에 의한 환불금 등)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 총액을 “자금관리 대리사무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위해 분양수입금을 “자금관리 대리사무사”에게 납부하기로 한다.
- “자금관리 대리사무사”는 부족한 사업비의 조달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 “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은 토지비, 공사비 등의 지급에 사용될 수 있다.
- “수분양자”는 “자금관리 대리사무사”가 본 사업의 자금관리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 반환의무는 “매도인”이 부담함을 확인하며 향후 분양대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여 본 사업의 자금관리계좌 잔액이 분양대금 반환액 보다 적을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한 자금조달의무는 “매도인”의 책임으로 이행함을 확인한다.
- 분양대금반환과 관련하여 매수인인 “수분양자”는 “자금관리 대리사무사”에게 분양대금반환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없고 “매도인”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한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 단위 : 원 )

구분	건축	전기	소방, 정보통신
회사명	(주)영화키스톤건축사사무소	(주)한양기술단	(주)더베스트이앤씨
감리금액	1,618,796,480 (VAT 별도)	431,092,300 (VAT 포함)	646,000,000 (VAT 별도)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인해 증가 될 수 있습니다.  
 ※ 감리금액의 증가로 인한 공급대금(분양가)의 변동은 없습니다.

■ 친환경 건축물 성능수준 표기 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구 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고기밀 창호	적용	- 외기직접면한 창호의 기밀성능 KS F2292 1등급이상
고효율 기자재	적용	- 급수펌프(인버터 60%적용), 고효율 변압기 - 전동기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 급탕 및 급수펌프는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 사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 거실, 침실, 주방에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5조 제11호 카목에 따른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1개이상 설치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 세대 내 현관 부근에 1개소 설치
고효율 조명기구	적용	- 세대, 공용부, 부속동 - 안정기내장형램프, 형광램프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에 따른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고, 유도등 및 주차장 조명기기, 옥외등 등 LED램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을 사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화장실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 세대 내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절수설비	적용	- 세대 내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 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p><b>녹색건축 예비 인증서</b></p> <p>녹색건축인증 우수(그린2등급)</p> <p>충도센터1지구 지역주택조합아파트</p> <p>(2022.5.26. ~ 사용승인일)</p> <p>kpc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p>	<p><b>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b></p> <p>충도센터1지구 지역주택조합아파트</p> <p>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p>

■ 기타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 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여부와 내진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구분	등급
내진능력	VII-0.20736g

-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 2에 따라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MMI)등급. I~Ⅶ)으로 표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2에 따른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 높이
  - 주차시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주차장 차로는 6.0m이상(연석포함)이며 출입구의 높이는 2.3m이상 입니다.
- 부대복리시설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게스트하우스, 작은 도서관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분양보증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가. 보증서 번호	나. 보증금액	다. 보증기간
제 01292022-101-0007100 호	일금사백삼십삼억육천오백팔십만오천원정(₩43,365,805,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요 내용

○ 보증사고 (보증약관 제4조)

-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상복합주택분양계약(이하 "분양계약"이라 함)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상복합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보증서 발급일을 말한다)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승인(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을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려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같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약관 제1조)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상복합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상복합주택】** 주택 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에 건축하는 경우의 주택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주택과 함께 동일건축물에 건축되는 일반에게 분양하는 복리시설(주택 이외의 시설중 오피스텔을 제외한 시설)을 말합니다. 이하 "복리시설"이라 함) 및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보증약관 제2조)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보증서발급(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증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0.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대출금의 이자
  11. 보증사고 전에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15.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구 분	사업주체(송도센트럴1지구 지역주택조합 외 1인)		시공업체
상 호	송도센트럴1지구 지역주택조합	코오롱글로벌(주)	코오롱글로벌(주)
법인등록번호	204-82-80204(고유번호)	110111-0036502	110111-0036502
주소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60-14	경기도 과천시 코오롱로 11	경기도 과천시 코오롱로 11

■ 당사 홈페이지 : <http://www.송도하늘채아이비원.com>

※ 분양정보 및 안내는 당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60-14 (송도동 21-49)/ ☎ 1522-8765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